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무원의 반국가범죄에 대한 급여수급권 박탈 요건에  
퇴직 후 사유를 포함하도록 확대 등〉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65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3  |
| 2. 검토의견 .....                                                | 5  |
| 가. 반국가범죄로 인한 급여수급권 박탈 요건에 퇴직 후의<br>사유를 포함 .....              | 5  |
| 나. 반국가범죄로 인한 급여 환수 시 이자 가산 및 지급이 제한된<br>연금의 공무원연금기금 귀속 ..... | 10 |
| 다. 반국가범죄에 대한 급여 환수권의 소멸시효 연장 .....                           | 1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선회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21.
3. 회부연월일 : 2025. 5. 2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중대한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전역 이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 수급이 가능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민의 성실한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를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임. 그러나 국가의 안보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까지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따라,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러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환수에 관한 소멸  
시효를 기존보다 연장된 1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제  
도적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

## II.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또는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불고지죄 제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급여 제한의 요건을 퇴직 후의 사유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기지급된 급여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는 한편 형이 확정된 후의 급여는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하도록 하는 한편, 급여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

| 현행                                                                                                                                                                                           | 개정안                                                                                              |
|----------------------------------------------------------------------------------------------------------------------------------------------------------------------------------------------|--------------------------------------------------------------------------------------------------|
|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생략)                                                                                                                                                             |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u>급여는 지급하지</u> | ④ <u>재직 중 또는 퇴직 후의----</u><br>-----<br>-----<br>-----<br>-----<br>-----<br>-----<br>-----범죄를 저지른 |

|                                                                                                                                                                                                              |                                                                                                                                                                                                                                                                                                  |
|--------------------------------------------------------------------------------------------------------------------------------------------------------------------------------------------------------------|--------------------------------------------------------------------------------------------------------------------------------------------------------------------------------------------------------------------------------------------------------------------------------------------------|
| <p><u>아니한다.</u></p><br><br><p>제88조(시효) ① · ② (생략)</p><br><p>③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lt;<u>단서 신설</u>&gt;</p><br><p>④ · ⑤ (생략)</p> | <p><u>때부터 형이 확정된 때까지 지급한 급여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수하며 형이 확정된 후의 급여는-----아니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한다.</u></p><br><p>제88조(시효) ① · ② (현행과 같음)</p><br><p>③ -----<br/>-----<br/>-----<br/>-----<br/>----- . 다만,<br/><u>제65조제4항에 따른 공단의 환수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u></p><br><p>④ · ⑤ (현행과 같음)</p> |
|--------------------------------------------------------------------------------------------------------------------------------------------------------------------------------------------------------------|--------------------------------------------------------------------------------------------------------------------------------------------------------------------------------------------------------------------------------------------------------------------------------------------------|

제88조(시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다만,  
제65조제4항에 따른 공단의 환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 2. 검토의견

### 가. 반국가범죄로 인한 급여수급권 박탈 요건에 퇴직 후의 사유를 포함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함)이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불고지죄를 제외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이하 “반국가범죄”라 함)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등에게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공무원등이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급여 제한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의 사유”로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급여수급권을 박탈하는 제재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반국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제한의 요건을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2009.12.31. 「공무원연금법」

개정(법률 제9905호,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동 법률 개정 전에는 그 사유의 발생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재직 중의 사유”로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당시 해당 법률조항을 “퇴직 후의 사유”에까지 적용하여 급여를 제한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3항위헌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02.7.18.선고, 2000헌바57 전원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후 동 급여제한의 요건을 현행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임.

상기 위헌소원 사건에서 퇴직 후에 범한 반국가범죄를 급여 제한의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시된 찬반 논거를 살펴보면,

이를 찬성하는 논거로는, 1) 공무원은 퇴직 후라도 반국가적 활동에 나설 경우 국가의 안위에 훨씬 심각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국가적 활동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재직 시기를 불문하고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고,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뿐 아니라 사회보장 혹은 공로보상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특수성, 범죄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퇴직 후에 반국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가정책적 목적에 따라 채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당사자가 부담하였던 기여금과 그 이자를 반환하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바,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3) 급여의 제한에 있어 개인에 대한 살인이나 공금의 횡령 등은 국가 전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아닌 반면 내란이나 외환 등의 범죄는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바, 반국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한 급여의 제한과 일반 사범에 대한 급여의 제한에 차별을 두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반면, 헌법재판소는 퇴직 후에 범한 반국가범죄를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뿐 아니라,<sup>1)</sup>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는바,<sup>2)</sup>

1)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판례집 14-2, 1]

“공무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범할 때에 국가에 대한 위해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크다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퇴직 후에도 그 위험성이 같은 정도로 높다고 할 수는 없다. …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청구권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 후의 사유로 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급여청구권을 사후에 발생한 사유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을 결하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피해를 주어 법익균형성을 잃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2) [헌재 2002. 7. 18. 2000헌바57, 판례집 14-2, 1]

그 논거로는, 1)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의무(성실 의무 등)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에 부과되는 의무로서 퇴직한 후에도 이를 계속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퇴직 후에 범한 범죄에 의하여 퇴직급여 등 수급권을 제한한다면 이는 공무원에게 퇴직 후에도 계속 재직 시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게 될 것이고,

2) 공무원이 반국가범죄를 범할 때에 국가에 대한 위해가 일반인의 경우보다 크다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재직시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퇴직 후에도 그 위험성이 같은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할 때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위해가 클 개연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차이는 퇴직급여수급권을 제한 내지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법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으며,

---

“이 사건 법률조항을 ‘재직 중의 사유’로 한정하여 보는 입장을 취할 경우, 공무원 재직 중에 일반범죄를 범한 자와 재직 중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자 사이에는 제한되는 급여의 범위에 다음과 같은 차등이 있다. … 이러한 차별은 공무원이 재직 중 반국가적 범죄를 범할 경우 국가에 대한 위해가 일반범죄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을 퇴직 후의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하는 경우와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큰 차별이 있게 된다. 퇴직 후 일반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급여청구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한 후 시일이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의 퇴직 후에 범한 반국가적 범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퇴직 후 일반범죄를 범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 퇴직급여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반국가적 범죄를 범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3)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과 그 근무기간 등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및 국민의 안녕에 미치는 정도를 구분함이 없이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공무원 연금법」상의 급여청구권을 퇴직 후의 사유에 기하여 일률적으로 소급하여 제한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고,

4) 퇴직 후 일반 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급여청구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자는 퇴직한 후 시일이 얼마나 경과 하였는지에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소급하여 박탈하게 되어 큰 차별이 있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상기 위헌 소원 사건에서 제시된 찬반 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동 사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나 그 밖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입법적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 안이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에서 형벌 등에 따른 급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2002년도 헌재에서 반국가범죄자에 대한 연금 급여의 제한을 퇴직 후 사유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 평등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위헌임을 결정한바, 제도 연혁과 헌재 판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나. 반국가범죄로 인한 급여 환수 시 이자 가산 및 지급이 제한된 연금의 공무원연금기금 귀속

현행법은 공무원등이 반국가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무원이 부담했던 기여금은 반환하는 한편 이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기지급된 급여는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기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경우 현행법 제37조에 따르는데, 이 경우 급여의 환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이자 등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sup>3)</sup> 이에 따르면 반국가범죄와 관련된 급여 환수 시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게 됨.

개정안은 반국가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형이 확정된 때까지 지급한 급여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수하려는 것으로, 반국가범죄를

### 3) 「공무원연금법」 제3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 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행한 이후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때 해당 급여로부터 발생한 이득도 함께 환수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현행법 제37조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하는 이유는 부정한 급여 지급을 본인이 초래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국가범죄에 대한 급여 환수의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반국가범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지 현행법상 급여의 환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한편, 반국가범죄와 관련하여 형이 확정된 후 지급되지 않는 급여의 공무원연금기금 귀속과 관련하여, 기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입이 증가하거나 지출이 감소하여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낮은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은 급여를 이미 받은 사람이 반국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이자 가산 여부를 달리 적용한 현행법의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다. 반국가범죄에 대한 급여 환수권의 소멸시효 연장

현행법에서는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반국가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 환수에 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재 「국가재정법」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데, 개별 법률에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소멸시효의 종류>

| 구 분                | 소멸시효 내용                                                                                                                                                                                        |
|--------------------|------------------------------------------------------------------------------------------------------------------------------------------------------------------------------------------------|
| 국세기본법<br>(제27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억원 이상 국세징수권 : 10년</li> <li>▸ 그 외의 국세징수권 : 5년</li> </ul>                                                                                              |
| 국민연금법<br>(제11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 : 10년</li> <li>▸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가입자의 권리 : 5년</li> <li>▸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환수할 권리 : 3년</li> </ul>                       |
| 국가재정법<br>(제9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 채권·채무의 권리 : 5년</li> </ul>                                                                                                                          |
| 민 법<br>(제162~16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 : 20년</li> <li>▸ 채권 : 10년</li> <li>▸ 이자,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 기간을 정한 금전·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3년</li> <li>▸ 여관, 음식료, 입장료 채권 : 1년</li> </ul> |

소멸시효의 기간은 각 권리의 성질·내용 등에 따라 입법자가 입법 재량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헌법재판소도 소멸시효 기간 관련 입법의 위헌 여부는 그것이 자의적이어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sup>4)</sup>

따라서, 반국가범죄에 대한 급여 환수권의 소멸시효 연장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멸시효 관련 타 입법례, 법률 관계의 조속한 확립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인사혁신처는 반국가범죄의 중대성과 소멸시효 관련 타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 연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342 |

4) [헌재 2004. 3. 25. 2003헌바22, 판례집 16-1, 411]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소멸시효제도가 진정한 권리관계의 실현과 지속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라는 양면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고 각 필요성은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시효기간을 정한 입법의 위헌 여부는 그것이 자의적이어서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